

# 기(학과 복)습 노트(7회) - 1.4

(네이버 카페 - 김민현 경찰학)



##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도로	①도로법에 의한 도로 ②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③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④그 밖에 현실적으로 ( )의 ( )의 통행을 위하여 ( )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자동차전용도로	( )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고속도로	( )의 고속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라 함은 ( ), ( ), ( )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 )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
중앙선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 · 울타리 등으로 설치 한 시설물.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의 가장 ( )의 황색점선
( )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
차선	( )와 ( )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
보도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 )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
보행자전용도로	( )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
자동차 등	( )와 ( )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실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 )에 두는 것
정차	운전자가 ( )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운전	①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 )운전, ( )운전, ( ), ( )에 대해서는 도로 아닌 곳에서도 해당한다. ②운전의 착수시기→( ) (판례)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 - (운전 O/X)(판례) ③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은 ( )만을 의미
초보운전자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 )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 부터 (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 )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 기(역과 복)습 노트(7회) - 1.4

(네이버 카페 - 김민현 경찰학)



## 【차마】

차	자동차	( )자동차(10인 이하),( )자동차(11인 이상), ( )자동차, ( )자동차,이륜자동차(배기량 ( )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 )한다) ⑥자동차에 포함되는 일정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 자동차 운전면허로 도로에서 운전 가능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 도로보수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믹서트레이러, ( ) (트럭적재식), 도로를 운행하는 ( )의 지게차
	건설기계	①굴삭기, 불도저 등 ②굴삭기나 콘크리트살포기 등과 같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상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도로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에서 ( )의 이륜자동차와 ( )의 원동기를 단 차
	자전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 )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 )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우마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	

- ▶ ( )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총칭하는 말이다.
- ▶ ( )이라 함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총칭하는 말이다.

## 【보행】

보행자의 개념	① 의의 : ( )을 의미하며, 유모차나 보행보자용 의자차도 보행자에 포함(O/X) ② 사례 : 손수레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는 이를 끌고 가는 자는 보행자에 (포함 O/X)되지만, 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자는 보행자에 (포함 O/X)
---------	--

## 【주행차량과 보행자와의 안전거리】

안전거리	안전거리란 ( )보다 약간 긴 정도의 거리
정지거리	( )거리 + ( )거리

##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① 횡단보도에는 ( )와 ( )을 설치한다.
②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 )을 설치한다.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 )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횡단보도의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 )이내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 할 수 있다.

## 【자전거】

통행방법	① 원칙 :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등의 도로를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 )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	---

# 기(역과 복)습 노트(7회) - 1.4

(네이버 카페 - 김민현 경찰학)



	<p>② 서행 또는 일시정지 :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 )하거나 ( )하여야 한다.</p> <p>③ ( ) :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자전거 등의 앞지르기</p> <p>㉠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 )으로 통행할 수 있다.</p> <p>㉡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 또는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 )하거나 필요한 경우 ( )하여야 한다.</p>
도로의 횡단	<p>① 원칙 :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 )하여야 한다.</p> <p>② 자전거횡단도 설치권자 : ( )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p>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p>①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 )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p> <p>④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 ) 이상인 경우로 한다.</p> <p>⑤ a. 위반 시 ( )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12호).</p> <p>b. 현장에서의 통고처분 시 범칙금 : 범칙금 ( )만원, 음주측정 불응시 범칙금 ( )만원에 처한다.</p>

## 【안전표지】

( ) 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 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 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 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 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 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 【어린이 보호구역(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구분	내용
지정권자	( ) 등 : ( ) 또는 ( )과 협의 필요
설치구역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 )m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 등(경찰서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 )m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치내용	① 조치권자 - ( )이나 ( )

# 기(학과 복)습 노트(7회) - 1.4

(네이버 카페 - 김민현 경찰학)



가중제재	㉠ 차마의 ( )하거나 ( )하는 것
	㉡ 차마의 ( )하는 것
	㉢ ( )도로를 ( )로로 지정 · 운영하는 것
	㉣ 운행속도를 매시 ( ) 이내로 제한하는 것
②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위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 )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 )주차장 설치 금지	
의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요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가중제재한다.
적용시간	오전 ( ) ~ 오후 ( )
적용대상	① ( ) · 지시 위반 ② ( )위반 ③ ( ) 위반 ④ ( ) 위반 ⑤ ( )금지 · 제한 위반
내용	① 범칙금 · 과태료의 가중적용 ② 운전면허 별점의 2배 가중적용 ㉠ ( ) 위반 ㉡ ( )위반 ㉢ ( )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 강화】 - 운전면허 별점 (2배) 가중처벌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신호 · 지시 위반		
	60km/h 초과		
	40km/h초과~60km/h이하		
	20km/h초과~40km/h이하		
	20km/h 이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일반도로)			

## 【앞지르기】

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 )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금지장소	㉠ ( ) 안 또는 ( ) 위 ㉡ ( ) ㉢ 도로의 ( ) 곳 ㉣ 비탈길의 ( )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 )

## 【서행 또는 일시정지】

구분	서행	일시정지
의의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장소	① ( )	① ( )하고

# 기(역과 복)습 노트(7회) - 1.4

(네이버 카페 - 김민현 경찰학)



교차로	( ) 교차로
②도로가 ( ) 부근	②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
③비탈길의 ( ) 부근	③보도의 횡단(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
④가파른 비탈길의 ( )	④철길건널목의 통과
	⑤적색등화 점멸 시
	⑥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⑦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

## 【주취운전 단속】

주취상태	혈중알콜농도 ( )% 이상, 만취상태는 혈중알콜농도 ( )% 이상
자동차 등	①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단속대상
도로	②모든 건설기계가 음주단속 대상 ③취중 경운기가 트랙터 운전의 경우 주취운전에 해당 (O/X) 도로에서의 운전은 주취운전의 요건 (O/X)

## 【음주운전 처벌기준】(제148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이상 음주운전</li> <li>( ) 이상 측정 불응</li> <li>( )% 이상</li> </ul>	( ) 이상 ( ) 이하의 징역 또는 ( ) 이상 ( )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측정거부 시	( ) 이상 ( ) 이하의 징역이나 ( ) 이상 ( )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 ~ ( )% 미만	( ) 이상 ( ) 이하의 징역 또는 ( ) 이상 ( ) 이하의 벌금	
( ) ~ ( )% 미만	( ) 이하의 징역 또는 ( )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 ) 이하의 징역이나 (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일명 윤창호법)

음주운전 부상사고	( ) 이상 ( ) 이하의 징역 또는 ( ) 이상 ( )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망사고	( ) 또는 ( ) 이상의 징역

## 【정차 및 주차】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주차금지의 장소
① ( )·( )·( )이나 ( ) 도로의 보도	① ( ) 및 ( )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 )미터 이내의 곳	② 다음의 장소로부터 ( )미터 이내의 곳 ㉠ ( )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 ) ㉡ ( )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 )미터 이내의 곳	③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④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 )미터 이내의 곳	

# 기(역과 복)습 노트(7회) - 1.4

(네이버 카페 - 김민현 경찰학)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 )미터 이내의 곳	
⑥ ( )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 설치된 곳으로부터 ( )미터 이내인 곳	
⑦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긴급자동차】

<b>도로교통법</b>	( )자동차, ( )자동차, ( )차량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긴급 자동차
<b>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에 의한 당연(법정) 긴급자동차</b>	① ( ) 자동차 중 ( )·( ) 그 밖에 ( )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 ) 사용되는 자동차 ③ ( )의 자동차 중 ( )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 ) 또는 ( ), 보호관찰 대상자의 ( )·( )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⑤ 국내의 요인에 대한 ( )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b>긴급자동차의 특례</b>	긴급자동차는 자동차의 제한속도(최고속도 및 최저속도),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앞지르기 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는다. 다만, 긴급자동차의 속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속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 )은 긴급자동차의 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b>일시정지 및 앞지르기금지 (도로교통법 제51조)</b>	①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 )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 )에 ( )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 )에 ( )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 ) .
<b>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도로교통법 제52조)</b>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 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미리 ( )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b>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전자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b>	①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 )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②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 )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 기(학과 복)습 노트(7회) - 1.4



(네이버 카페 - 김민현 경찰학)

	<p>자동차에서 ( )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 )"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위반시 ( )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p>
<p><b>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제53조의3)</b></p>	<p>1.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p> <p>2. 정기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p>

## 【운전면허 종별·구분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대형면허	①승용자동차 ②승합자동차 ③화물자동차 ④특수자동차 (구난차 등은 제외) ⑤건설기계 10종 ㉠ 도로보수트럭,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천공기(트럭 적재 식) ㉣ 도로를 운행하는 ( )의 지게차 ⑥원동기장치자전거	( ) 이상 + ( ) 이상 운전 경력 (이륜 자동차 제외)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①견인 형 특수자동차	18세 이상
		소형 견인차	②( )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①총중량 ( )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구난 형 특수자동차 ②( )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승용자동차 ②승차정원 (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적재중량 (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총중량 ( )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⑤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 )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한다) ⑥원동기장치자전거	18세 이상	
	소형면허	①3륜 화물자동차 ②3륜 승용자동차 ③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①승용자동차(승차정원 ( )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 ②적재중량 ( ) 이하의 화물자동차 ③총중량 ( ) 이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④원동기장치자전거 ①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배기량 ( )인 오토바이 ②원동기장치자전거 ①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 )인 오토바이 ②자전거에 원동기( )를 장착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만 운전할 수 있다.	16세 이상	
연습	제1종 보통	①승용자동차	18세	



# 기(학과 복)습 노트(7회) - 1.4

(네이버 카페 - 김민현 경찰학)



면허		②승차정원 ( )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적재중량 ( ) 미만의 화물자동차	이상
	제2종 보통	①승용자동차(승차정원 ( )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 ②적재중량 ( ) 이하의 화물자동차	

## 【운전면허 결격사유】

① ( )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 )세 미만)인 사람
②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③ 듣지 못하는 사람, ( )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 )·( )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⑥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 )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 ) 미만인 사람

##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

즉시 응시	①( )를 받지 아니하여(적성검사기간경과)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제1종 면허 적성검사기준에 불합격한 자가 제2종에 면허에 응시하는 경우
6월	운전면허취소로 ( )간 발급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 지나면 취득할 수 있다.(단, 공동위험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 )이 지나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1년	2~5년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①누적벌점 초과에 의한 취소 : 1년-( )점 이상, 2년-( )점 이상, 3년-( )점 이상 ②( )행위 ③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 )된 때(혈중알코올농도 ( )% 이상) ④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는 제외) ⑤무면허운전 또는 면허정지기간 중에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또는 운전면허발급 제한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 ( ) 날 부터 ⑥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 )를 한 때
2년	①( ) 이상의 음주운전 및 ( ) 이상의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②(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 이상 또는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하여 ( ) 이상 위반한 자 - ( )한 날(무면허) 또는 ( )된 날 ③( )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④( )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⑤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았을 경우 ⑥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⑦운전면허효력의 정지 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날 때 ⑧다른 사람의 ( )



# 기(역과 복)습 노트(7회) - 1.4



(네이버 카페 - 김민현 경찰학)

	㉘ 음주운전을 하다가 ( ) 경우
3년	㉠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를 위반(무면허운전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하여 운전을 하다가 ( )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 취소된 날 ㉡ ( )를 범하거나 ( )한 자가 ( )로 운전한 경우 - 위반한 날
4년	5년의 제한사유(무면허운전·음주운전·과로 등 운전·공동위협행위)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 )한 후 ( ) 및 ( )한 경우-취소된 날부터
5년	㉠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또는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던 중 사람을 ( ) 없이 도주한 경우 - 위반한 날부터 5년 ㉡ ( )운전·( ) 등(과로·질병·약물)운전·( ) 중에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5년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 )에 이르게 한 경우

##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1.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 (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 ), 75세 이상인 사람은 (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 ))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정기 적성검사 - (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 ), 75세 이상인 사람은 (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 ))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 ) 이상인 사람
4. 범칙금 부과 : 제2종 면허를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내리는 제도 대신 과태료만 부과된다. 따라서 면허증을 갱신받지 않아도 면허취소사유가 아니다. 그러나 제1종 면허의 경우는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취소된다.

## 【연습운전면허】(★★★)

효력	① 유효 기간 :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 ) 동안 효력을 가진다. ② 효력 상실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①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 )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표지를 붙여야 한다.
위반 시 조치(연습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연습운전면허에 대해서는 범규위반이 있더라도 별점관리대상의 면허가 아니므로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취소처분	연습운전면허는 ( )는 불가하며, ( )만 가능하다. ㉠ 도로교통공단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 )만 발생한 경우

# 기(역과 복)습 노트(7회) - 1.4



(네이버 카페 - 김민현 경찰학)

## 【국제운전면허증(★)】

국내발급 → 외국운전	발급권자	( )
	유효기간	( )부터 ( )
외국발급 → 국내운전	유효기간	( )부터 ( )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차종 운전가능
	면허취소·정지	지방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 취소·정지 (가능/불가)
	운전금지	지방경찰청장은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의 ( )가능
	통고처분 사업용 자동차 운전금지	통고처분 (가능/불가능) 사업용 자동차 운전(가능/불가). 다만 ( ) 입차하여 운전하는 것은 가능

## 【임시운전증명서(★)】

발급권자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청장이나, 실체는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거나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발급요건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면허증 ( )을 한 경우(도로교통공단에 위탁) ② 운전면허의 ( ) 또는 (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경찰서장에게 위임)
효력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유효기간	① 원칙적으로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 )일 이내로 한다. ② 단,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대상자의 경우에는 ( )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 )에 한하여 ( )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임시운전증명서의 최대유효기간은 ( )일 또는 ( )일이다.

## 【운전면허증의 반납】

(1)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이내에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 ).
①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② 운전면허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③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을 때
④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때
(2) 경찰공무원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 )할 수 있다.

##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인적 피해 교통사고 야기 시)

구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 ) 사고발생 시부터 ( )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 ) ( )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 ) ( )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 1명마다	( ) ( )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기(역과 복)습 노트(7회) - 1.4

(네이버 카페 - 김민현 경찰학)



## 【통고처분 및 과태료 처분】

통고처분	경찰서장은 범칙자에 대하여는 범칙금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사람에게 대하여는 통고 처분할 수 없고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1. ( ) 2. ( ) 3. ( )
범칙자	1.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 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 ) 운전자 2. 범칙행위로 ( ) 사람.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형사처벌 받지 않게 되는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
이중처벌 여부	신호위반 등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 받아 범칙금 납부하였다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 - 이중처벌 (O/X)
범칙금의 납부	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 )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 ) 이내에 내야 한다. ②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 )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③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 ).
불이행자의 처리	① 경찰서장은 통고처분 제외대상자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 )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 )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 ).

## 【교통사고 시 처리(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의 요소	차에 의한 사고	차체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차량에 적재된 화물 등 차량과 ( )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 포함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직접적인 차 운행뿐만 아니라 차 운행과 ( ) 포함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교통사고 (O/X) (판례)		
	업무상 과실	피해의 결과 발생 교통사고는 과실과 고의가 결합된 특가법 위반( ) 경우 제외하고 과실범		
	도로에서 발생해야 하는지 여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	
		도로교통법	①도로에서 발생한 것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 - 도로 아닌 곳에서 발생한 단순 물적 피해사고는 교통사고 (O/X) ②다만, 도로 아닌 곳에서 단순 물적 사고 야기	

# 기(학과 특)습 노트(7회) - 1.4

(네이버 카페 - 김민현 경찰학)



			후 도주 -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위반으로 동법 제148조에 의해 처벌
조치의무	① 구호조치의무는 ( )에서의 사고운전자에게도 인정 ※판례 - ①위책사유 없는 사고차량 운전자도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有/無) ②교통사고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다더라도, 가해차량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 (성립/불성립)		

## 【교통사고 처리기준】

도로교통법	( )사고	도로만 해당
	( )( )	도로+도로 아닌 곳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적용되는 법 • 합의, 종합보험, 공제 가입 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적피해를 야기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	
	인피사고	( )( ) 곳
	적용예외(공소 ○)	㉠ 특례법상 예외 12개항 위반한 치상사고 ㉡ ( ), ( ) ㉢ ( ) ㉣ ( ) 거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자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발생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	
	인피+도주	( )( ) 곳

## 【12개 특례사항】

어린이	( )에서의 안전의무위반
신	( )위반
승	( )의무 위반
주(가)	( ) 및 ( )
무	( )운전
도(보다가)	( ) 위반
속(이)	과속( ) - ( )KM 초과
앞(아파)	( )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중앙	( ) 및 ( )에서의 횡단·유턴·후진의 경우
철	( ) 위반
보(봉에서)	( ) 위반
추락	화물 적재 시 화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

## 【신뢰의 원칙과 관련한 판례】

고속도로에서의 주의의무	①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없다) ②고속도로 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는 통상의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중앙방면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 하에서 운행하는 것이지만 위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다면 피해자가 반대 차선의 교행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그 진행차선 쪽에서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하는 것이다 / 할 필요는 없다)
자동차전용도	①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

# 기(역과 복)습 노트(7회) - 1.4

(네이버 카페 - 김민현 경찰학)



<p><b>로상의 주의의무</b></p>	<p>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는 (있다/없다)</p> <p>②제한시속 70킬로미터의 사고지점을 8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50미터 전방 우측도로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비록 그 지점이 사람의 횡단보행을 금지한 자동차전용도로였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옆으로 동 차량을 운전하고 지나가야만 할 운전자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감속 서행하는 등 피해자가 도로에 들어올 경우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없다)</p>
<p><b>교차로상의 주의의무</b></p>	<p>①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직진신호가 주의신호로 바뀐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계속 진행하여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고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차량이 주의신호임에도 미리 좌회전해 올지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조치를 강구하면서까지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있다/없다)</p> <p>②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과 충돌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없다)</p> <p>③사거리를 녹색신호에 따라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 할지라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상대방차량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있다/없다)</p> <p>④통행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교차로 왼쪽에서 과속으로 교행해 오는 것 등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있다/없다)</p>
<p><b>반대차로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b></p>	<p>운전자에게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동인의 차 진행차선 전방으로 갑자기 진입 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있다/없다)</p>
<p><b>횡단보도 상에서 주의의무</b></p>	<p>①직진 및 좌회전신호에 의하여 좌회전하는 2대의 차량 뒤를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 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닐 사대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운전사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있다/없다)</p> <p>②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펴면서 서행하는 등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없다)</p>
<p><b>육교 밑에서의 주의의무</b></p>	<p>십야이고 그 장소가 도로교통이 빈번한 대도시 육교 밑의 편도 4차선의 넓은 길 가운데 2차선 지점인 경우라면 이러한 교통상황 아래에서의 자동차 운전자는 무단 횡단 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해가면 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규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의 앞을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그 안전까지를 확인해 가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있다/없다)</p>
<p><b>기타</b></p>	<p>①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대향차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기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있다/없다)</p> <p>②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p>

# 기(역과 복)습 노트(7회) - 1.4

(네이버 카페 - 김민현 경찰학)



무는 (있다/없다)

③버스운전사에게 전날 밤에 주차해둔 버스를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없다)

④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시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동인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어린이를 먼저 하차 시키던가 운전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 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사고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6.7.8, 선고, 86도1048, 판결]

⑤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 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없다)

⑥내리막길이고 우측으로 비스듬히 구부러진 도로상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 2차선 상을 진행하는 피고인의 운전트럭과 그 우측인도 사이로 무리하게 빠져 나가려고 선행하여 가던 피고인의 운전트럭을 바짝 붙어 따라가다가 위 트럭과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 피고인으로서 후방주시까지 하여 뒤에서 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든가 나아가 선행차량이 일시 정차하거나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없다)

⑦도로공사관계로 우측 노변에 자갈을 깔아 일방통행 도로의 노폭이 약 3미터 정도로서 자동차 1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협소한 곳이라면 뒤에 따라오는 다른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를 추월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후사경으로 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있다/없다)